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서천서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3. 26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2명), 변상(5명), 경고(6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어업활동 실적 미충족으로 인한 대손보전 불인정
 - 금융어업자금대출 대한 및 기한연장하면서 수산물 판매금액 연간 합계 120만원 충족 등 여부를 확인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대손보전 불인정을 받았음.
-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 -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을 취급시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용담보 가액으로만 대출한도를 산출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음.
- 외부감정평가 전산 의뢰 부적정
 - 외부감정평가 의뢰시 부적정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5조(대출금의 용도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80조의3(대출한도 산출), 제225조의2(대손보전 대상, 범위, 한도, 비율 등), 제3편 제3조(상당 및 서류징구), 제45조(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), 제46조(시설자금 소요자금 산정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
-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(예)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
- 「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」 제11조(대손보전 대상)
- 「정책여신업무방법」 제96조(정의), 제117조(기한연장 및 재약정)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, 제32조(기타 조치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